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통계이용자에 대한 사업체 단위 통계자료의 식별형태 제공범위 확대 (제47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체의 고유식별번호로서 기업데이터 결합 시 표준화된 연계키로 활용되고 있어 기업데이터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활용이 필수
- 사업자등록번호는 통계법상 식별정보로서 일반 이용자 대상 대외 제공이 어려워 기업통계등록부 이용상 제약 요소가 되어 왔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- 통계이용자에게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 단위 통계자료의 정보에 ‘사업자등록번호’를 추가하고자 함
- * (현행) 사업체명, 업종, 주소, 전화번호 → (개정) 기존 4가지 항목 + 사업자등록번호
- ※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‘사업자등록번호’를 민간에 공개하도록 의결(’21.5.13.)하였으며 판례는 정보공개법상 법인의 중대한 경영·영업상 비밀이 아니라고 정함(2003두8302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업통계등록부 등 통계데이터의 이용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. 민감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(제52조의4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제1항제1호*의 삭제로 인해 “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”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('23.9.15. 시행)되면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해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
 - * “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”를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
- 따라서 사회조사 등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통계작성 업무 수행*을 위해 통계법에 별도의 법령상 근거를 신설할 필요
 - * 사회조사(통계청 작성)은 건강 관리 현황, 유병 기간, 치료 방법 등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의 건강부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-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승인통계의 작성(제18조, 제20조)과 통계자료의 제공 및 이용(제30조, 제31조) 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제5조의3제1항(총조사), 제24조(행정자료의 요청), 제24조의2(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) 사무 수행 시 민감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통계작성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통계업무 수행에 기여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3.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(별표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과 관련 모호한 규정에 따른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로, 권익위는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을 의결('21.2월)
- 위 방안에서 지적된 사항인 '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'의 명확화 및 '위반차수 적용규정 미비' 해소를 위한 통계법 개정이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(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 명확화) 가중처분의 적용시점을 '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'로 명확화
 - * 처분 전에 한 위반행위가 처분 후 적발되는 경우에도 가중처분을 할 수 있는 문제 방지
- (위반 회차 적용 규정)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규정하여 집행상의 혼란 방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행정제재 가중처분 관련 법 집행 기준을 명확화하여 국민 권리침해 방지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